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606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606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508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송희근

변론 종결2021. 12. 9.

판결 선고2022. 1. 13.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508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20. 체결된 양도계약은 76,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한 위 양도계약 취소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으나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정현

판사박재성

별지